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31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3176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52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하현

변론종결 2021. 9. 1.

판결선고 2021. 9. 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52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9,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박준민, 판사 이근수